

2015.7.23(목)14:00

법인이사회

회 의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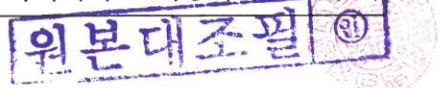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

법인이사회 회의록

일시	2015. 7. 23. (목) 14시 ~ 15시 30분		
장소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		
참석현황	참석인원	9 명	이사 : 백영선, 송용의, 우광수, 우옥자, 윤진숙, 이승희, 이기성 감사 : 박영주, 이용진
	불참인원	명	이사 : 감사 :
안건	가. “정관 변경 - 목적사업 삭제” 나. “정관 변경 - 부분개정”		
논의 및 결의	- 전자회의록 승인 - 가.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015년 1차 추경 확정에 따른 예산 승인 나. 법인 임원 사임 및 선임 다. 대표이사 추대 가. 정관 변경 - 목적사업 삭제 나. 정관 변경 - 부분개정 다. 기타 -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임명		
	대표이사 백영선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이사정수 7명 전원 참석하여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회의를 개의함. 제 1호의 안 : “정관 변경의 건 - 목적사업 조항 삭제”		
회의내용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의장은 사회자에게 제1호의 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사회자 박진동 현 법인정관에 목적사업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두 가지로 되어있으나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추가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만큼의 법인 재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는 것을 도(道) 담당자에게 구두로 권유 받은 내용을 설명함.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본 건과 관련하여 배포된 법인 정관을 참고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물음.		
	이사 이기성 정관 목적사업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세부항목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언급이		


위본대조필 ①

있는데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물음.

사회자 박진동

장애인 시설의 종류에 우리 복지관과 같은 시설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 보람원고 한우리작업장 같은 직업재활시설이 분류가 나눠져 있으며 복지관에서 직업재활사업을 운영하는 것 이 외 별도의 시설을 운영한다는 뜻임을 설명 함.

이사 이승희

운영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추후에 후원이나 출연, 다양한 수익사업 등으로 인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다시 기재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는 조항은 삭제시키는 것을 제안하다.

이사 이기성

이승희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이사 송용의

이승희 이사의 동의에 “제청하다”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의 정관 제1장(총칙) 제4조(사업의종류) 내 목적사업 2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삭제 건을 원안대로 반기로 동의 제청이 들어와서 개의가 없자 가부를 물었으며, 가하면 “예”로 아니면 “아니오”로 답해 주기를 물음.

이사 전원 “예”로 답함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의 정관 내 목적사업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삭제건은 참석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공표하다.

제2호의 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장 13조 개정”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의장은 제3호의 안과 관련하여 설명을 요청함.

사회자 박진동

정관 제3장(임원의 임면)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20조(임원의 겸직금지)까지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으나 임원의 선임, 외부추천이사, 특수관계 등의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시 지적받은 사항임을 설명함.

이에 제13조(임원)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2배수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외국인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원본 대조필

5.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로 부분 개정할 것에 대한 설명을 함.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본 건과 관련하여 배포한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이사들의 의견을 물음.

이사 송용의

정관으로써 당연히 들어가야 할 임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고 지도점검에 지적을 받았다면 이번에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사 이승희

제시된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자료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는데 하나로 수정해 개정할 것을 제안하다.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본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자 가부를 물음.

이사 우광수

이승희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이사 윤진숙

우광수 이사의 동의에 “제청하다”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의 정관 제3장 13조의 개정안을 법령 명시 자료 수정 후 나머지 원안대로 반기로 동의 제청이 들어와서 개의가 없자 가부를 물었으며, 가하면 “예”로 아니면 “아니오”로 답해 주기를 물음.

이사 전원 “예”로 답함.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의 정관 제3장 13조의 개정안을 법령 명시 자료 수정 후 나머지 원안대로 반기로 것에 대해 심의에 의결하였음을 공표함.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해준데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함.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사회자에게 현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사회자 박진동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복지관 운영규정 상 “관장의 추천으로 법인 대표가 임면하다”로 되어 있기에 작년 12월 이후 공석인 사무국장을 지난 3월부터 본인이 직무대행하고 있었음을 설명함.

원본대조필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작년 11월 취임하고 현재까지 본인을 보필하며 복지관 사업과 운영을 총괄해 온 박진동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8월 1일 부로 정식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제안함. 의결 안건은 아니지만 여러 임원분들의 의견을 요청함.

이사 우광수

복지관 개관할 당시부터 근무해온 관리자로써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며 대표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이사 이기성

우광수 이사의 의견에 “제청하다”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현 장애인복지관 박진동 사무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무국장 임명 제안에 대하여 동의 제청이 있었고 개의가 없자, 가부를 물었으며, 가하면 “예”로 아니면 “아니오”로 답해주기를 물음.

이사 전원 “예”로 답함.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장애인복지관 박진동 사무국장 임명 제안에 대하여 여러 임원들의 의견이 전원 만장일치로 취합되었으며 그에 따라 8월 1일 자로 정식 임명하겠다고 공표함.

의장 백영선 대표이사

이상 금일 안건을 모두 심의 의결하였고, 추후 정관에 대한 정밀검토 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건으로 제시하기로 함. 더불어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회의를 마침.

원본대조필 ①

위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확인하다.

2015 . 7 . 23 .

• 대표이사(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 백영선

(인)

• 이사(횡성군한우리작업장 원장) : 송용의

宋
印
(인)

• 이사(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원장) : 우광수

光
印
(인)

• 이사(횡성군새마을부녀회장) : 우옥자

玉
印
(인)

• 이사(횡성군민대통합위원) : 윤진숙

진
印
(인)

• 이사(도원산업 대표) : 이기성

基
印
(인)

• 이사(횡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장) : 이승희

勝
印
(인)

• 김사(태강산업 대표) : 박영주

英
印
(인)

• 김사(횡성군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이용진

用
印
(인)

